

# 디자인보호법 이렇게 바뀐다



## I. 서언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법제는 1961년 법률 제951호로 의장법이 새로이 제정된 이후 디자인분야의 환경변화에 따라 여러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발전해왔다. 이러한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 변천사를 개괄해보면, 1980년 개정법에서는 조약우선권제도와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이 도입되었고, 1997년에는 라이프사이클이 짧고 유행성이 강한 7개 물품을 대상으로 무심사제도가 처음 도입된 한편 복수디자인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으며, 디자인권의 존속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2001년에는 부분디자인제도와 화상디자인제도를 시행하였고, 2004년에는 글자체를 디자인의 보호객체로 추가하였으며,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변경하였다.

오늘날 기업환경은 반도체 등 일부 첨단산업을 제외한 제품의 제조기술이 평준화되어감에 따라 디자인이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은 디자인을 단순히 제품의 외형을 개선하는 수단이 아닌 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혁신의 수단(Design as innovation)으로 활용하는 '디자인 경영' <sup>1)2)</sup>을 도입하고 있다.

이렇듯 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최근 몇 년간 디자인 산업체·학계 등에서는 특허청에 디자인제도 개선에 대하여 지속적인 민원과 의견들을 제시하여 왔으며,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 기업체 방문조사, 학계 및 변리사와의 간담회 등<sup>3)</sup>에서는 강한 디자인권 창출과 시장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 1) '디자인경영'은 '특허경영', '브랜드경영', '디자인경영'을 포괄하는 개념인 '지식재산경영'의 구성요소이다. 여기에서 '지식재산경영'이란 '기업의 생산활동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아이디어 또는 노하우, 기업 이미지 창출을 위한 브랜드·디자인을 권리화하고 재산으로서 보호하며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고 나아가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하며, '디자인경영'이란 '전략적 관점에서 디자인을 기업경영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가치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 2)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 애플사의 스티브잡스는 "사람들은 대부분 디자인을 걸포장쯤으로 생각한다. 디자인은 인간이 만든 창조물의 중심에 있는 영혼이다."라고 하고 있으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디자인은 21세기 최후의 승부처이다."라고 한 바 있다.
- 3) 설문조사는 2008년 8월 21일부터 29일까지 한국특허정보원 콜센터에 의해 2007년 디자인 출원 고객 1천 명에 대한 전화조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기업체 방문조사 및 간담회 등은 2008년 9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진행되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특허청에서는 이러한 디자인 환경변화와 고객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2009년 초에 우리나라『디자인 법·제도·인프라 개선을 위한 3-STEP 전략』<sup>4)</sup>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1단계 전략<sup>5)</sup>에 이은 2단계 전략의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지식경제부에서도 최근 디자인에 대한 민간 및 공공부문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지난 2009년 12월에『21세기 디자인산업 비전과 발전전략』을 통해 기업의 지속성장과 일류도약을 위한 디자인혁신, 디자인생태계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한국의 디자인 영토 확장, 디자인강국 도약을 선도할 창의적인 디자인 인재 육성, 국민의 관심과 향유를 통한 국가 디자인 수준 제고라는 5대 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보다 먼저 2008년 12월에는『제4차 산업디자인진흥 종합계획(2008~2012)』에서 디자인 기반조성을 위한 추진과제로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통한 디자인권 보호기간 연장, 침해유형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추진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다양한 디자인 환경변화와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나라 디자인제도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디자인보호법 독자법화를 위한 개편방안 연구(2008)』,『무심사등록 디자인권의 신뢰성 제고 방안 연구(2008)』 등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작년 8월부터 3-STEP 전략과 관련한『디자인 비전』을 수립하여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특히 2008년의 설문조사에 이어 작년 하반기부터는 개정법률안 초안의 내용을 확정짓기 위한 디자인 다출원업체 대상 간담회, 변리사와의 열린 간담회, 지역 순회(서울, 부산) 개정 디자인보호법 설명회, 한국캐릭터협회·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등 디자인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올해 초까지 20차례 이상 진행하는 등 다양한 법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여론 수렴과 개정법률안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사전 입법 절차를 진

#### 4) <주요 요구 및 지적사항>

- 강한 디자인 청출, 도면요건의 완화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공감
  - 디자인 컨셉(concept) 보호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야 함
  - 마동록디자인의 보호에도 관심 필요
- 디자인 보호법위의 절진적 확대 요청
  - 도면작성 Tool 개발·보급
- 시장 변화에 신속한 대응 요청
  - 물품(또는 디자인) 트렌드의 빠른 변화를 심사시스템에 적시 반영
  - 비슷한 물품은 한 번의 출원 및 등록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
  - 다음도 물품의 출현에 따라 물품범위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
- 디자이너, 학생들에 대한 디자인 권리화 교육·홍보 강화 등



5) 1단계 전략의 주요내용은 세계 최초 3D 도면제출 허용, 도면작성방법 및 제출 개수 자유화, 무심사출원 품목의 확대, 한 벌 품목의 확대 등이다.

행하였다.<sup>6)</sup> 아래에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그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 II. 디자인보호법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 1. 개정 배경

2010년 디자인보호법 개정 배경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디자인분야의 환경변화와 국제적 규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디자인의 대상영역을 확대하고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둘째, 디자인의 창작성 요건의 강화, 독자적인 디자인권을 인정하는 관련디자인 제도의 신설 및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등을 통하여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셋째, 디자인등록출원 보완 제도의 도입 및 복수디자인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마지막으로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데에 있다.

### 2. 디자인분야의 환경변화와 국제적 규범에의 대응

#### (1) 디자인의 대상영역의 확대(안 제2조제1호)

##### 1) 개정 이유

현행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물품' 7)에 대한 해석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가변적인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디자인 환경변화에 따라 '물품'의 범위에 물품의 부분(화상디자인 포함)(2001년)과 글자체(2004년)를 추가하여 디자인의 보호 대상영역을 확대하여 왔다. 이번 법 개정은 우리나라가 올해 말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에 관한 로카르노협정」<sup>8)</sup>(이하 '로카르노협정'이라 하고 이에 따른 분류체계를 '로카르노분류'라 한다)에 의한 물품 명칭 및 분류를 우리 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우리나라 물품분류에는 없는 로고, 그래픽 심벌 등<sup>9)</sup>에까지 디자인의 보호 대상영역을 확대하게 되었다.

그동안 디자인 산업계에서는 세계적 추세인 저작권, 상표권 및 디자인권의 중첩보호 경향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디자인의 보호대상이 아닌 로고, BI, CI, 그래픽 심벌 등 2차원적인 물품 및 인테리어 디자인 등에까지 디자인의 대상영역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디자인 환경과 고객의 수요변화에 따라 법적 보호가치가 있는 물품의 범위는 가변적이며 이에 따라 물품의 보호대상이 확대되는 것은 필연적일 것이다. 요즘 보호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인테리어 디자인 등도 장차 우리 디자인보호법에 포함되어야 할 보호가치 있는 디자인의 대상영역일 수도 있으며, 산업구조의 질적 변화와 생활문화의 변화에 따라 디자인의 대상은 지속적으로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 2) 개정 내용

당초 입법예고 안에는 유럽공동체 디자인제도의 입법 예처럼 물품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sup>10)</sup>,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물품의 부분과 글자체에 대한 규정의 예를 참조하여 법 제2조제1호의 괄호 부분에 로카르노분류에 따른 물품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또한, 디자인등록출원서 등에 물품의 명칭 및 로카르노분류에 따른 물품류의 구분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 6) 2010년 디자인보호법 개정법률안은 올해 1월에 그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며, 수차례의 디자이너, 기업체, 학계, 변리사 등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3월에 개정안을 확정하였고,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의 입법예고 및 그 후 2개월에 걸친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 7일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입법예고 이후의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법제처 수정을 거치면서 입법예고된 법안과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으나 그 핵심내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 7) '물품'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주요국의 입법례로는 유럽공동체(EU) 디자인보호규정(Council Regulation)을 들 수 있다. 동 규정 제3조에서는 "물품(product)"이란 "일체의 공업제품 또는 수공업제품을 의미하며 특히 합성물의 구성부품, 포장, 복장, 그래픽 심벌 및 활판 출판자체 등을 포함하나 컴퓨터 프로그램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8) 원문은 "Locarno Agreement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Industrial Designs"으로 디자인에 관한 분류체계의 국제적 통일화를 도모하기 위한 다자간 조약으로 동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로카르노분류는 32개류(Classes), 219개 Subclasses, 7,024개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다(<http://www.wipo.int/classifications/locarno/en/index.html> 참조).
- 9) 로카르노분류상 제32류에는 그래픽 심벌, 로고, 표면 문양 및 장식 등이 물품의 예시로 들어가 있다.
- 10) 당초 입법예고 안은 제2조제1의3호를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물품의 정의 규정을 두는 것이었다. "1의3. '물품'이라 함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공업 또는 수공업제품과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에 관한 로카르노협정' 및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 현 행   | 개 정   |
|---|---|
|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1.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形狀·模樣·色彩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視覺을 통하여 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글자체 및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에 관한 로카르노협정」에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 제9條(디자인등록출원)①(생략)   | 제9조(디자인등록출원)①(생략)   |
|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제11조제2항에 따른 분류의 구분(이하 “그 물품류의 구분”이라 한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에는 각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그 물품류의 구분  |
| 제72조의3(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①(생략)   | 제72조의3(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①(생략)   |
|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그 물품류의 구분  |

- 11) 디자인권의 효력은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범위까지 미치게 되는데(법 제41조) 보호범위 판단주체에 대한 디자인보호법상 명문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판례(대법원 1996.1.26 선고 95후 1135 판결), 심사기준(제4조제4항) 및 외국의 입법례(유럽공동체 디자인보호규정 제10조 : 견문이 넓은 사용자, 여기서 '견문이 넓은 사용자'란 제품의 최종사용자보다는 넓은 수준의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분야의 수집가(collector)나 소매상(retailer)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를 참조하여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명문화하였다.
- 12) 유럽공동체 디자인보호규정 제10조에서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1항 : 공동체디자인에 의하여 부여되는 보호의 범위에는 견문이 넓은 사용자(the informed user)에게 전체적으로 다른 인상을 주지 아니하는 디자인 모두를 포함한다. 제2항 : 보호의 범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디자인 개발에 대한 창작자의 자유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 13)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물품성을 전제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가 물품의 용도와 기능에 따라 정해지게 되어 다음도 물품의 경우 해당 디자인을 해당 물품 모두에 출원해야만 권리로서 보호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악한 디자인권에 대한 비판이 많았고 디자인제도의 무용론까지 대두하게 되었다. 한편, 개정법률안에서는 전통적인 3차원적 물품 외에 로카르노분류에 따른 2차원적인 로고 타입(Logo type), 그래픽 실별(Graphic Symbol) 등을 물품의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해 따라(개정법률안 제2조제1호) 디자인 컨셉 자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의 심사부담이 크게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특허청에서는 전용 가능한 물품들을 사전에 조사하여 특정 물품 검색시 이를 부분분류로 하여 검색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무심사 물품을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검색에 소요되는 심사처리기간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디자인의 대상영역이나 보호범위 확대에 따라 법 이용자들의 다소간의 혼란과 특허청의 심사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는 목소리에는 특허청에서도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있다. 다만, 디자인이 기업의 경쟁력이나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는 오늘날 비용만 많이 들고, 권리라는 양하며, 베키기가 만성화되어 있는 현재 우리나라 디자인제도의 근간을 새롭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디자인 경쟁력을 뒤바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는 어느 때보다 더 강한 상황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경직된 제도의 운영으로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디자인 출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디자인 경쟁력 지수에서도 2005년 1위에서 2007년 3위로 추락한 일본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2)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의 확대 (안 제43조제2항 신설)

### 1) 개정 이유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43조에서는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디자인권의 보호범위 설정을 위한 객관적인 판단자료에 대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등록디자인의 구체적인 보호범위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인데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43조제2항에 신설하게 되었다.

### 2) 개정 내용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일반 수요자<sup>11)</sup>에게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상을 주는 디자인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다.<sup>12)</sup> 또한, 출원서에 적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그 물품류의 구분 그 자체는 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다음도 물품의 출현에 따른 디자인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디자인 컨셉(concept) 자체를 보호할 수 있게 하였다.<sup>13)14)</sup>

- 14) 유럽공동체 디자인보호규정 제36조제6항에서도 물품의 명칭 및 분류, 디자인의 설명은 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물품의 명칭을 표시하는 것은 상표에서의 상품과는 달리, 모든 제품을 포함하여 시장에서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 및 도면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면서 '견문이 넓은 사용자(the Informed User)'를 한정하는데에 의미가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물품의 분류는 본질적으로 데이터 저장 및 통계처리와 관련되며 이는 또한 검색에도 활용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Report

시선집중

| 현행   | 개정  |
|--|---|
| <p>第43條(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出願書에 첨부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p> <p>〈신설〉</p> | <p>제43조(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①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표시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해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li> <li>2.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또는 견본</li> <li>3.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에 적혀 있는 디자인의 설명</li> </ol> <p>② 제1항에 따른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일반 수요자에게 전제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상을 주는 디자인 모두를 포함한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원서에 적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그 물품류의 구분 그 자체는 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

## 3.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 강화

### (1) 디자인 창작성 요건의 강화(안 제5조제2항)

#### 1) 개정 이유

외국의 유명 디자인의 형상, 모양 등을 모방하거나 이들을 결합하여 국내에서 출원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그 창작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국내 디자인의 창작수준을 높이는 한편, 국제적으로도 지재권 침해 국가의 이미지를 불식시킬 필요성이 있었다.<sup>15)</sup>

#### 2) 개정 내용

현행 디자인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태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외국'에서 주지된 형태에 대해서도 용이 창작 규정을 적용하여 디자인등록을 거절하도록 하였다.<sup>16)</sup>

### (2) 관련디자인 제도의 도입

(안 제7조 및 제42조 등)

#### 1) 개정 이유

관련디자인 제도의 도입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현행 유사디자인 제도 자체의 문제점에 따른 개정 필요성이다. 종래 유사디자인 제도에서는 제42조에 따라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합체하게 되므로 기본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초과할 수 없어, 기본디자인과는 유사하지 않으나 유사디자인에만 유사한 영역에 대해서는 그 권리범위를 인정받을 수 없었다.<sup>17)</sup> 둘째, 우리나라가 2012년에 가입할 예정인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

| 현행  | 개정   |
|---|--|
| <p>제5조 (디자인등록의 요건)</p> <p>② 디자인등록출원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者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形狀·模様·色彩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디자인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p> | <p>제5조 (디자인등록의 요건)</p> <p>②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또는 국내나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p> |

15) 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유명 디자인을 현지에서 침해시 그에 대한 제재를 해당 국가에 요구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외국의 유명 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선행되어야 함은 상호주의 원칙상 당연한 전제라 할 것이다.

16) 일본의 경우 용이창작 기준을 '국내 또는 외국에서 공연히 알려진'으로 규정하여 우리나라와 달리 '주지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보다 더 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할 수 있다.

17) 대법원 1989. 8. 9. 선고 89후25 판결, 1995. 6. 30. 선고 94후1749 판결, 2008. 12. 24. 선고 2006후 1643 판결 등

18) 원문은 'Geneva Act of the 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Industrial Designs'이다.

에 관한 헤이그협정<sup>18)</sup>(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등록된 디자인이 기본디자인인지 유사디자인인지에 따라 권리의 존속기간 및 효력범위가 달라지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사디자인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존속기간과 권리범위를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sup>19)</sup>

## 2) 개정 내용

### (가) 유사디자인제도의 폐지 및 관련디자인제도의 도입

(안 제7조제1항)

관련디자인에 독자적인 권리범위 부여에 따른 법적 효과를 명확히 하고 기존의 유사디자인과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디자인'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 (나) 출원시기의 제한(안 제7조제1항 단서)

관련디자인의 출원시기에 대한 제한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권리가 연장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출원시기를 기본디자인의 등록이 계재된 디자인공보의 발행일 전까지만 할 수 있게 하였다.<sup>20)</sup>

### (다) 독자적인 존속기간의 부여(안 제40조제1항 단서 삭제)

현행 제40조제1항 단서의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관련디자인에도 독자적인 존속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권리의 안정성을 높였다.

### (라) 독자적인 권리범위의 인정

(안 제42조 개정, 안 제68조제4항 및 제5항 삭제)

현행 제42조의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합체한다'는 규정을 개정하여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자는 등록된 관련디자인 또는 그 관련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sup>21)</sup> 또한, 제68조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하여 기본디자인등록이 무효가 되더라도 관련디자인등록은 무효가 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존속되도록 하였다.

### (마) 관련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 설정의 제한

(안 제47조제1항 단서 신설)

권리범위가 중복되는 관련디자인권과 기본디자인권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전용실시권 설정을 인정하게 되면 2인 이상의 권리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권리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디자인권만의 독자적인 전용실시권 설정을 제한하였다.

### (바) 둘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한 이전 및 전용실시권 설정의 제한(안 제46조제6항 및 제47조제6항 신설)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둘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분리하여 이전할 수 없게 하였고, 둘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전용실시권은 모든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하여 같은 자에게 동시에 설정하도록 하였다.

19) 특허청에서는 헤이그협정 가입 결정에 따라 유사디자인 제도 자체에 대한 폐지를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유사디자인 제도는 그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속의 유용성이 있다는 기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를 존치시키되 명칭을 바꾸는 방향으로 정책결정을 하게 되었다.

20) 유사디자인의 출원시기에 대한 통계조사 결과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부터 유사디자인의 출원일까지는 평균 3.9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기본디자인과 유사디자인의 동시출원이 60.5%, 동시출원을 포함한 1개월 이내가 전체 대비 7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통계를 기초로 당초 개정안에서는 관련디자인의 출원시기를 기본디자인 출원 후 1개월까지로 한정하였으나 디자인업계와의 간담회에서 1개월의 시기는 너무 단기간이라는 의견을 받아들여 기본디자인의 등록공보 발행일까지로 하게 되었다. 한편, 관련디자인의 출원시기를 디자인의 '공지' 개념과 연계시켜 일본이 공지일로 보는 공보발행일에 대응되는 디자인권 설정등록일로 출원시기를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디자인의 공지 개념과 관련디자인의 출원시기는 논리밀연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 아닌 입법정책의 문제라 할 수 있다.

21) 개정된 제42조(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의 효력)에 대해서는 제41조와 중복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견해가 있으나, 이제까지 유사디자인 제도하에서 유사디자인의 독자적인 효력을 부인했던 것과 명확한 구별을 위해서 독립된 규정을 둔 것이다.

# Report

시선집중

| 현 행   | 개 정  |
|---|--|
| <p>第7條(유사디자인) ①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에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유사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유사디자인만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후단 신설)</p> <p>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받은 유사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 출원된 유사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p> <p>〈신 설〉</p> <p>第9條(디자인등록출원) ①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者는 다음 각號의 사항을 기재한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4의2. 단독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의 여부</p> <p>5.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번호(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사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p> <p>제1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p> <p>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유사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 출원으로,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유사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p> <p>第23條의4(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權利의 移轉 등)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權利는 移轉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權利와 유사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權利는 함께 移轉하여야 한다.</p> <p>第26條(디자인등록거절결정) ① 審査官은 디자인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4조의24,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제6항,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li> <li>2. 約款</li> <li>3.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등록 을 받을 수 없는 경우</li> <li>4. 條約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li> <li>5.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유사디자인등록된 디자인 또는 유사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표시한 경우</li> </ul> </li> </ul> | <p>제7조(관련디자인) ① 디자인권자나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 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하 "기본디자인"이라 한다)에만 유사한 디자인(이하 "관련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관련디자인만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은 기본디자인의 등록이 게재된 디자인공보의 발행일 전까지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관련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p> <p>③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제47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 실시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p> <p>제9조(디자인등록출원) ①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서 또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4. 단독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관련디자인등록출원 여부</p> <p>5.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번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번호(제7조제1항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한다)</p> <p>제18조(출원의 보정과 요지변경)</p> <p>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을 단독의 디자인등록 출원으로 변경하거나,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관련디자인등록 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p> <p>제23조의4(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p> <p>제26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①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에 대한 거절결정(이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4조의24,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제6항,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li> <li>2.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li> <li>3. 조약을 위반한 경우<br/>〈約款〉</li> </ul> |

| 현 행   | 개 정   |
|---|---|
| <p>나.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p> <p>다. 기본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취하·포기되거나 디자인 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p> <p>라.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인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또는 기본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인과 다른 경우</p> <p>마. 유사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기본디자인에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5조, 제7조, 제16조제1항·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것이거나 제5조제2항의 규정 중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 결정을 하여야 한다.</p> |   |
| <p>제40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① 디자인권의存續期間은 디자인권의設定登録이 있는 날부터 15年으로 한다. 다만,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의存續期間滿了日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의存續期間滿了日로 한다.</p> <p>제42조(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 第7條第1項의 规定에 의한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合體한다.</p> <p>제46조(디자인권의 讓渡 및 共有) ① 디자인권은 이를 讓渡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함께 讓渡하여야 한다.</p> <p>〈신설〉</p>   |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제5조, 제7조, 제16조제1항·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p> <p>1.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것인 경우</p> <p>2.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5조제2항 중 국내나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경우</p> <p>3. 관련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가. 관련디자인등록된 디자인 또는 관련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표시한 경우</p> <p>나.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p> <p>다. 기본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취하·포기되거나 디자인 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p> <p>라. 관련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인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또는 기본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인과 다른 경우</p> <p>마. 관련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p> <p>바. 제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기본디자인의 등록이 게재된 디자인공보의 발행일 이후에 관련디자인무심사출원된 경우</p> <p>사. 관련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7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p> <p>제40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①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제39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p> <p>제42조(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의 효력)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자는 등록된 관련디자인 또는 그 관련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46조(디자인권의 양도 및 공유) ① 디자인권은 양도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p> <p>⑥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둘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분리하여 이전할 수 없다.</p> |

# Report

시선집중

| 현 행   | 개 정   |
|---|---|
| 第47條(専用實施権) ①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他人에게 專用實施権을 設定할 수 있다. <단서 신설><br><br><신 설>  | 1. 제29조의7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br>2. 제33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br>3. 제53조에 따라 디자인권을 포기한 경우<br>4. 제68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br><br>제47조(전용실시권) ①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은 같은 자에게 동시에 설정하여야 한다.<br><br>⑥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둘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전용실시권은 모든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하여 같은 자에게 동시에 설정하여야 한다.<br>1. 제29조의7제3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br>2. 제33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권이 소멸한 경우<br>3. 제53조에 따라 디자인권을 포기한 경우<br>4. 제68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
| 第68條(디자인등록의 無效審判)<br><br>③ 디자인등록(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제외한다)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디자인권은 그 디자인등록이 同號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br><br>④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그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은 無效로 된다.<br><br>⑤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이 無效가 된 때에는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그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이 同號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제68조(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br><br>③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디자인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디자인권은 그 디자인등록이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br><br><삭 제><br><br><삭 제>   |

다음 호에 계속



박주연 서기관

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디자인심사정책과  
제42회 행정고등고시 합격